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9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주진우 · 안철수
김재섭 · 이만희 · 박덕흠
김상훈 · 이양수 · 김은혜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.

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,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1조의19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
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